

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 신청(변경)서

처리기간 : 14일
(첫만남이용권, 장애인활동지원,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서비스는 30일)

신청인	성명	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 전산관리번호)		세대주와의 관계		전화번호	
	주소						휴대전화	
							전지구편	

가족사항	세대주와의 관계	성명	주민등록번호 (외국인등록번호 전산관리번호)	동거여부	건강상태 (장애/질병)	직장명	전화번호 (집/직장)

※ 배우자 관계 (☐ 법률혼 ☐ 사실혼 ☐ 사실상 이혼)

본인부담금 환급계좌 ¹⁾	지원대상자와의 관계	성명	금융기관명	계좌번호	예금주	비고(사유)

제출처	사회보장급여 내용							
요면동 주민센터	[☐]보육료지원 • 유아학비지원 * 부모급여(보육료) 지원 포함		지원대상자	신청구분				
				[☐]어린이집(0~2세) 기본([☐]장애 [☐]다문화) [☐]어린이집(0~2세) 연장 [☐]어린이집 방과후 [☐]어린이집(3~5세)([☐]장애 [☐]다문화) [☐]장애아 보육료(6~12세) [☐]유치원 유아학비(3~5세)([☐]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)				
				[☐]어린이집(0~2세) 기본([☐]장애 [☐]다문화) [☐]어린이집(0~2세) 연장 [☐]어린이집 방과후 [☐]어린이집(3~5세)([☐]장애 [☐]다문화) [☐]장애아 보육료(6~12세) [☐]유치원 유아학비(3~5세)([☐]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)				
				[☐]어린이집(0~2세) 기본([☐]장애 [☐]다문화) [☐]어린이집(0~2세) 연장 [☐]어린이집 방과후 [☐]어린이집(3~5세)([☐]장애 [☐]다문화) [☐]장애아 보육료(6~12세) [☐]유치원 유아학비(3~5세)([☐]사립유치원 저소득층 유아학비)				
			* 어린이집(0~2세) 연장보육자격을 신청한 경우라도, 자격 확인 결과에 따라 어린이집(0~2세)기본보육 자격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 * 0, 1세 아동은 부모급여(보육료) 자격으로, 어린이집(0~2세)로 신청하면 됩니다. * 동일보장기구원의 계좌가 아닐 경우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고, 디딤씨앗계좌(DDA) 또는 압류방지통장이 있는 경우에도 반드시 기재					
	[☐]가사간병방문지원		지원대상자		신청요건(1개 선택)			서비스시간
			[☐]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[☐] 중증질환자 [☐] 희귀난치성질환자 [☐] 소년소녀가정 [☐] 월 24시간 [☐] 조손가정 [☐] 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 [☐]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[☐] 월 27시간 [☐]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[☐] 월 40시간					
	[☐]장애아동 가족지원		발달장애 서비스	지원대상자	장애 유형	[☐] 뇌병변장애 [☐] 청각장애 [☐] 시각장애 [☐] 언어장애 [☐] 지적장애 [☐] 자폐성장애 [☐] 미등록 (9세 미만)		
				장애 정도	[☐]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[☐]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[☐] 미등록			
필요서비스 (중복 체크가능)			[☐] 언어재활 [☐] 청능재활 [☐] 미술심리재활 [☐] 음악재활 [☐] 행동재활 [☐] 놀이심리재활 [☐] 재활심리 [☐] 감각발달재활 [☐] 운동발달재활 [☐] 심리운동 [☐] 기타()					
			지원대상자					
		언어발달 지원 (비장애아동)	필요서비스 (중복 체크가능)	[☐] 언어발달진단 [☐] 언어재활 [☐] 기타 ()				
			장애 유형 (부모 또는 조부모)	[☐] 뇌병변장애 [☐] 청각장애 [☐] 시각장애 [☐] 언어장애 [☐] 지적장애 [☐] 자폐성장애				
[☐]발달장애 인 지원		발달장애 인 부모 상담 지원	지원대상자	자녀와의 관계		[☐] 부 [☐] 모 [☐] 기타()		
			장애 유형 및 정도	장애 유형	[☐] 지적장애 [☐] 자폐성장애 [☐] 미등록(영유아)			
		주간활동 및 방과후 활동 지원	장애 유형 및 정도	장애 유형	[☐] 지적장애 [☐] 자폐성장애		장애 정도	[☐]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[☐]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
			지원 유형	[☐] 주간활동서비스 ([☐] 기본형 [☐] 확장형) * 확장형 이용시 장애인활동지원급여가 일부 차감됩니다. [☐] 방과후활동서비스				

1) 부모급여(차액) 지급계좌로도 활용됩니다. 0, 1세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(보육료) 자격 신청 시 부모급여(차액)이 지급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좌정보를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.

[] 지역사회 서비스	지원대상자			서비스명		
	지원대상자			서비스명		
	지원대상자					
	신청요건 (1개 선택)	☐ 돌봄 필요 청년·중장년 ☐ 가족돌봄청년 ☐ 기타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자				
	[] 일상돌봄 서비스	지원 유형	서비스 유형 (중복체크 가능)		서비스명	
			☐ 기본서비스			
			☐ 특화서비스			
	※ 기본서비스 유형별 특화서비스 이용가능 개수 : 1개(A형), 2개(B형), 선택 불가(C형) ※ 기본서비스 미이용시 특화서비스 이용가능 개수: 2개(D형)					
	[] 긴급돌봄지원	지원대상자				
		지원 유형	☐ 기본돌봄 서비스			
(중복체크 가능)		☐ 방문목욕 서비스				
신청 사유 (중복체크 가능)		☐ 갑작스러운 질병·부상 등으로 필요한 경우 ☐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필요한 경우 ☐ 타 돌봄서비스 신청 후 대기 중인 경우 ☐ 재난피해로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☐ 기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				
[]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	지원대상자			지원신청	청소년본인 또는 부모, 주양육자 신청가능	
	지원대상자					
[] 장애인활동지원	지원대상자					
	긴급활동지원	☐ 해당 (※ 신규신청자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)				
	활동지원급여	신청유형	☐ 신규신청 ☐ 변경신청 ☐ 갱신신청 ☐ 노인장기요양전환자 지원			
		변경신청 사유 (※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)	☐ 장애상태의 변화 ☐ 학교생활 ☐ 직장생활 ☐ 취약가구 ☐ 독거(1인)가구 (19세 이상) ☐ 거주지 이전 ☐ 나머지 가족의 사회생활 ☐ 조손가정 (19세 미만) ☐ 한부모가정 (19세 미만) ☐ 기타			
	특별지원급여	☐ 출산 ☐ 자립준비 ☐ 보호자일시부재(☐ 결혼 ☐ 사망 ☐ 출산 ☐ 입원 ☐ 지역사회보호자) (※ 해당하는 항목에 모두 체크)				
[] 첫만남이용권	지원대상자	출생정보	☐ 국외출생 ☐ 출생순위 ☐ 첫째아 ☐ 복수국적 ☐ 둘째아 이상			
	지급방식	☐ 바우처(원칙) ☐ 현금(시설보호 아동 등) ☐ 현금(보호자명의 계좌)				
	카드정보 (국민행복카드)	보호자(카드 보유자)	☐ BC(은행) ☐ 삼성 ☐ 롯데 ☐ KB국민(은행) ☐ 신한			
		※ 유의사항 - 신규신청자의 경우, 발급 희망 카드사 및 회원 은행사(BC, KB카드를 선택한 경우)를 선택합니다 - 국민행복카드를 이미 소지하고 있는 경우, 해당 카드사를 선택합니다.				
[] 정신건강 심리 상담 바우처사업	지원대상자					
	지원 유형	☐ 1급 유형 ☐ 2급 유형				
	의뢰경로 (1개 선택)	기관에서 심리상담 필요성 인정	☐ 정신건강복지센터 ☐ 대학교상담센터 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☐ Wee센터/Wee클래스 ☐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수행기관 ☐ 정신의료기관 ☐ 기타 기관			
		그 외	☐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(우울증 선별검사, PHQ-9)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 우울 확인 ☐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☐ 재난피해자			
보 건 소	지원대상자	출산(예정)일		년 월 일		
	지원 유형	☐ 단태아 (☐ 첫째아 ☐ 둘째아 ☐ 셋째아 이상), ☐ 쌍태아 /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+단태아 (☐ 인력1명 ☐ 인력2명) ☐ 삼태아 /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+쌍태아 (☐ 인력2명 ☐ 인력3명) ☐ 사태아 이상 / 장애정도가 심한 산모+삼태아 이상 (☐ 인력2명 ☐ 인력4명)				
	[]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	기본 지원대상	☐ 자격확인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) ☐ 소득기준 이하			
		예외 지원 대상 (해당자만)	☐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☐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☐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☐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☐ 새터민 산모 ☐ 결혼이민 가정 ☐ 미혼모 산모 ☐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☐ 분만 취약지 산모 ☐ 미숙아 출산 산모 ☐ 기타(소득기준 완화 등)			
	서비스 제공 장소	☐ 자택 ☐ 기타				
	보건 소· 주민 센터	지원대상자				
[] 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		지원 유형 (중복 체크 가능, 조제분유는 변경 신청인 경우만 단독 신청 가능)	기본지원대상	☐ 기저귀 (☐ 국기초 ☐ 차상위 ☐ 한부모 ☐ 기타) ☐ 조제분유 (☐ 산모의 사망·질병 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☐ 기타)		
		예외지원대상 (지자체 자체 사업)	☐ 기저귀 (☐ 국기초 ☐ 차상위 ☐ 한부모 ☐ 기타) ☐ 조제분유 (☐ 산모의 사망·질병 ☐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 ☐ 기타)			

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		확 인 (√ 체크)
1.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 ☐ 개인정보 활용 목적 동 신청서를 접수한 보장기관의 장이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제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선정 및 확인조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활용하고자 합니다. ☐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요청 범위 인적사항 및 가족관계 확인에 관한 정보, 소득·재산·근로능력·취업상태에 관한 정보,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에 관한 정보, 그밖에 수급권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주민등록전산정보·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(기초생활보장과 초중고 교육비지원)은 본인, 배우자, 직계존·비속 및 그 배우자 정보, 영유아 및 한부모 가족은 본인, 배우자 및 직계비속 정보, 노인 및 장애인은 본인 및 배우자 정보), 금융·국세·지방세, 토지·건물·건강보험·국민연금·고용보험·산업재해보상보험·출입국·병무·보훈급여·교정 등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(행정정보공동이용 포함)을 통해 조회 및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. ☐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5년간 보유하고(지원대상자 보호에 필요한 사회보장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있음), 그 기간이 경과하면 파기함을 고지합니다. ☐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위 개인정보의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, 동의 거부 시 사회보장급여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급여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.		[]
유의사항		확인 (√ 체크)
1.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,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관계 법률에 따라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, 급여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등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이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환수할 수 있으며, 해당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징역, 벌금, 구류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		[]
2. 사회보장급여의 제공여부 결정에 필요한 조사를 거부, 방해 또는 기피할 경우 관계 법률에 따라 신청이 각하되거나 결정이 취소되고, 급여가 정지 또는 중지되거나,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.		[]
3. 이 신청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으면 거주지, 세대원, 소득·재산상태, 근로능력, 수급이력 등이 변동되었을 때 변동사유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해당 급여는 환수될 수 있으며, 관계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 또는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		[]
4. 사회보장급여 신청을 위해 작성·제출하신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.		[]

추가제출 서류	1. 신청인(대리 신청인)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*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,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
	2. 통장계좌번호 사본 1부(해당자에 한함)
	3. 어린이집(0~2세) 연장보육 신청의 경우 취업 증빙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장보육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(해당자에 한함)
	4. 건강 진단서(해당자에 한함)
	5. 조제분류 지원신청의 경우 의사진단서(소견서), 가족관계증명서 등 산모의 질환 또는 사망을 증명하는 서류 및 시설입소증명서,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등 시설아동, 가정위탁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
	6. 첫만남이용권 지원신청 시 시설입소아동,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, 복수국적자, 난민 인정자, 보호자 여부 확인이 필요할 경우 및 미혼부 자녀로 법원 등을 통해 출생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자격 확인이 가능한 서류
	7.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사업 신청의 경우, 신청요건에 따라 아래의 서류
	-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, 청소년상담복지센터, Wee센터/Wee 클래스 등의 기관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: 기관에서 발급하는 의뢰서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)
	-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의뢰된 경우 : 「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지침」의 별지 제4호 연계의뢰서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)
	-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: 정신건강의학과 의사,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(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)
	- 국가 정신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(우울증 선별검사, PHQ-9) 결과에서 중간 정도 이상 우울이 확인된 경우 : 일반 건강검진 결과통보서(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실시)
	-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: 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, 보호연장아동은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 보호확인서
	- 서비스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의 재산피해를 입은 본인 또는 재산피해로 사망한 자(실종자 포함)의 유가족 : 피해 사실확인서, 피해자인정결정서,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을 통한 확인
	8. 일상돌봄 서비스 신청의 경우, ①의사진단서, 소견서,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확인서 등 대상자 또는 그 가족의 돌봄 필요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, ②돌봄 제공자 부재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
	9.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의 경우, 의사진단서 및 소견서, 입원(퇴원)확인서, 주돌봄자의 사망신고서 등 긴급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

본인(대리신청인 포함)은 개인정보활용동의와 기타 유의사항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며, 위와 같이 사회보장급여(사회서비스이용권)를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대리 신청인²⁾) 성명 : (서명 또는 인)

신청인과의 관계 : (대리 신청의 경우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2) 가족, 친족(8촌이내의 혈족, 4촌이내의 인척),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및 기타 관계인(후견인) 등

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

□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

- 수집·이용 항목
 - 신청서에 기재된 내역 일체 : 성명·주민등록번호·주소·연락처 등
 - 자산조사 및 자격정보 일체 : 소득·재산 등 자산정보 및 장애유형·정도 등 자격정보
 - 국민행복카드 정보 일체 : 신청정보·카드번호·이용내역 등
- 수집·이용 목적
 - 전자이용권 제도 관련 본인 확인 및 자격 결정에 관한 업무
 - 바우처포인트 생성 및 이용대금 정산(본인부담금 납부·환급 포함)에 관한 업무
 - 전자이용권 서비스 제공·결제(보육료 및 유아학비 호환결제 포함)에 관한 업무
 - 국민행복카드 카드 제작 및 배송에 관한 업무
 - 전자이용권 서비스 중복수혜 및 부정수급 확인에 관한 업무
 - 전자이용권 서비스 만족도 조사 및 각종 안내문 발송에 관한 업무
 - 기타 전자이용권 서비스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
- 보유 기간 : 전자이용권 이용자격 종료 후 5년까지

□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(민감정보 포함) 처리 근거 안내

- 고유식별정보 : 주민등록번호, 외국인등록번호
- 민 감 정 보 : 장애 및 질병 등 건강정보
- 관 련 법 률
 - 「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27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 -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8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 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37조의2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

□ 개인정보 제3자 제공(목적·항목·제공처) 안내

- 국민행복카드 발급
 - 성명, 주소, 연락처 : 해당 카드사
- 보육료·유아학비 호환결제
 - 국민행복카드번호 : 보육통합정보시스템
- 중복수혜 및 부정수급 확인 등 제도 운영
 -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서비스 이용내역 : 유관 정부기관 또는 공공기관

□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

- 개인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? [] 동의함 [] 동의하지 않음
- 고유식별정보(민감정보 포함) 처리에 동의하십니까? [] 동의함 [] 동의하지 않음
-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? [] 동의함 [] 동의하지 않음

□ 동의를 거부할 권리 안내

- 귀하는 상기 개인정보를 수집·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, 동의를 거부하는 데 따르는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동의 거부 시에는 전자이용권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.

본인은(대리신청인 포함)은 상기 내용을 확인합니다.

※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.

20 년 월 일

신청인(대리신청인):

(서명)

■ 사업운영 자체 서식 (적용 2018.1.1.)

발급 대상자	대상자	성명(한글)	주민등록번호
	대리인	성명(한글)	생년월일 대상자와의 관계
	미성년자 발급동의서	① 징구 ② 미징구 ※ 만 14세 미만 아동은 법정대리인 동의 필요	

신청 구분	☐ 신규 ☐ 재발급	재발급사유	☐ 분실 ☐ 훼손 ☐ 기타
----------	--	-------	---

카드 수령지	수령인	□ 발급대상자 □ 보호자(가족 등)	대상자와의 관계 : ※ 수령자가 보호자인 경우 기재
		성명	생년월일 전화번호 -
	수령지	① 자택 ② 직장 ③ 읍·면·동주민센터 ※ 자택, 직장, 읍·면·동주민센터 중 희망 수령지를 체크하고 주소, 전화번호를 기재	
	자택	□ □ □ □ □	전화번호 -
	직장	□ □ □ □ □	전화번호

본인 부담금 환급 계좌	예금주	은행명	계좌번호
	* 대상사업 : 노인돌봄종합서비스(방문·주간보호·장애인활동지원, 가사간병방문지원)		

신청인(대리신청인) (서명 또는 인)

안내 및 유의사항

- 전자이용권(바우처) 사업 서비스 대상자(본인) 명의로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됩니다.
- 이미 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, 기존 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
국민행복카드 상담전화를 위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

개인정보 제공동의	국민행복카드 발급에 필요한 안내 및 확인(상담전화(TM))을 위하여 신청서에 기재된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공하는 데 동의하십니까? - 제공항목 : 성명, 연락처(주택, 휴대전화), 서비스신청 전자이용권(바우처) 사업명 - 제공목적 : 국민행복카드 발급 및 본인 확인 - 제공받는 기관 : 신청인이 지정한 국민행복카드 사업자(카드사) - 보유기간 : 카드발급 완료 등 보유 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[] 동의함 [] 동의하지 않음					
신청카드 (택1)	BC카드 [] IBK기업 은행 [] 경남은행 [] 부산은행 [] 제주은행	[] NH농 협 [] 광주은행 [] 수협은행 [] 하나은행	[] 대구은행 [] 우리은행 [] 우체국 [] 신한	[] 롯데카드 [] 삼성카드	KB국민카드 [] KB국민카드 [] 전북은행	[] 신한카드

본인은 본 동의서의 내용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안내받았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신청인(대리신청인) :

(서명 또는 인)

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,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,
국민행복카드 사업자(BC카드, 삼성카드, 롯데카드, KB국민카드, 신한카드) 대표 귀하

안내 및 유의사항

▶ 신청대상 : 만 19세 이상

- 전자이용권(바우처) 사업 서비스 대상자(본인) 명의로 국민행복카드가 발급됩니다.
- 이미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가 없으며, 기존 카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,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. 다만, 신청하신 전자이용권(바우처) 사업은 국민행복카드를 서비스 이용 및 결제가 가능하므로,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에는 가까운 국민행복카드 영업점(은행, 우체국, 카드센터 등) 방문, 카드사별 홈페이지 접속 또는 콜센터에 연락하여 직접 카드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국민행복카드는 신용카드, 체크카드 중 이용자가 선택하여 발급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카드사의 신용심사결과에 따라 신용카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카드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- 계좌압류자, 신용불량자 등 신용 또는 체크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용카드가 발급되며, 이용자의 선호에 따라 전용카드가 발급되지는 않습니다.

[제6호 서식]

■ 사업운영 자체 서식 (적용 2016.11.30.)

사회서비스 전용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법정대리인 동의서

카드발급 신청인 (지원대상자)	성명(한글)			
	주민등록번호			

법정대리인	성명(한글)			
	생년월일		연락처	—

상기 본인(법정대리인)은 카드 발급 신청인을 대리하여 국민행복카드의 발급 및 동 카드의 사용에 동의합니다.

년 월 일

법정대리인 (서명 또는 인)

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 귀하

안내 및 유의사항

-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인이 만14세미만 아동인 경우에만 작성합니다.
- 카드 발급 신청인란에 국민행복카드 발급 대상자 정보를 기재합니다.